

'99년 공정거래 정책방향



김 병 일

공정위 정책국장

1. 머리말

'99년은 20세기 마지막 해로서 21세기 진입을 앞두고 전세계적으로 경제·사회적인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세계 경제의 통합이 더욱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발전으로 경제의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가속화 되고, 모든 기업들이 국경 없는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을 벌이는 대경쟁(Mega-Competition)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금세기 국제무역의 기본원리로 인식되던 비교우위론이 퇴색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생존한다는 절대우위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금융,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국제적인 초대형 기업결합(Mega M&A)이 증대하여 기업이 다국적화 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정보·지식 사회로의 이행이다. 부가 가치 창출의 원천이 “물질(atom)”에서 “정보(bit)”로

대체되고 있다. 종래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자본·토지 등 전통적 의미의 생산요소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었으나, 정보·지식 사회에서는 전문인력·정보·지식·문화 등이 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정보가 체화된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산업의 중심도 금융·유통·컨설팅 등 서비스 부문이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문으로 이동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지식 사회에서는 민간과 기업에 축적된 정보·지식의 양과 질에 의해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다. 또한, 거래의 디지털(digital)화와 스피드(speed)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실물제품의 전시공간이나 수요자의 직접방문이 필요 없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의 급속한 증대로 구매행태가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소비자 보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편, 세계화, 개방화의 진전은 일국의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위협하고 있다. OECD는 '98년부터 회원국 경제정책에 대한 집중검토를 시작하는 등 개별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제기구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국가의 산업별 보호시책의 유효성은 크게 감소되고 있다. 또한, OECD, WTO, UNCTAD 등 국제기구에서의 경쟁규범에 관한 국제적 논의도 가속화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지난해 정부와 재계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핵심역량의 육성을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의 매각, 합병, 분사 등이 증가될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 개방화 등에 따라 외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99년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

- 企業構造調整의 促進
- 獨寡占 市場構造改善과 競爭制限의 行態 根絕
- 消費者 中心의 去來慣行 確立
- 公正한 下都給 去來秩序 定着
- 競爭政策의 國際規範化에 對應 및 國際的 協力 強化

가.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98년 12월 7일, 정부·재계·금융기관은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20개 실천사항에 합의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12.7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첫째, 5대 그룹의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한계기업, 비주력기업, 계열분리된 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둘째, 상호채무보증을 기한내에 해소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0년 3월까지의 해소계획을 파악하여 분기별로 점검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채무보증관행은 자율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셋째, 계열분리·분사화를 촉진하고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허용된 지주회사제도의 활용여건을 마련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노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손실분담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예외로 인정하고, 대기업집단의 계열분리 요건을 완화하여 분사화를 촉진하며, 자회사와 밀접한 거래관계에 있는 손자회사를 허용하여 지주회사제도가 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넷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담합

행위 등은 철저히 단속할 것이다.

나.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과 경쟁제한적 행태 근절

장기간 독과점 상태가 고착화된 주요 품목시장에 대한 구조개선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전지정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시장지배력은 구체적 사건마다 사후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개별법에 근거한 22개 카르텔 제도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약칭『카르텔 일괄정리법』의 제정으로 변호사 등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결정 카르텔이 폐지되고 단체수의계약 품목이 향후 3년 동안 매년 20%씩 축소되게 되었는 바, 그 이행실태를 금년 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의 시행령·규칙 등에 근거한 카르텔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주류·운수업 등 28개 업종의 진입규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각종 경쟁제한적인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가격 및 입찰담합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공사와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하는 건설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조달청 등 대규모 발주 기관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입찰관련 서류를 제출 받는 등 상시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고, 입찰관련 정보를 정밀 분석하여 담합소지가 큰 대규모 입찰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시에 가격담합에 대해서도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필요시 직권조사 실시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공공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준수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다. 소비자 중심의 거래관행 확립

상품의 전문화·다양화와 전자상거래 등 거래형태의 변화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초에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동 법의 제정을 계기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원활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시장에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시에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억제하는 개별법령상의 각종 표시·광고규정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제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 중심의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약관과 관련한 분쟁과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약관을 보급하고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시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소비자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은 핵심역량 위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시너지 효과가 없는 부문은 과감히 아웃 소싱(out-sourcing)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활동 폭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관행을 철저하게 방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하도급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하도급 대금의 결제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구조조정의 결과 각종 서비스의 위탁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용역위탁거래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마.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부응 및 국제적 협력 강화

OECD, WTO 등 국제기구에서의 경쟁정책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이러한 논의를 우리의 제도·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OECD는 '98년부터 회원국의 규제개혁 실적을 점검 중에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별 검토(country review)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검토를 우리 나라의 경제개혁 노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주창자 역할 수행에 대한 국제적 홍보의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개혁 노력이 선진국 사회에 제대로 알려진다면 우리의 대외신인도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WTO에서는 UR협정 이후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한 소위 "밀레니엄 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동 라운드의 출범여부 및 시기, 협상대상 등에 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나 만약 출범하게 될 경우 경쟁정책이 협상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WTO 「무역과 경쟁작업반」에서는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일본, 홍콩 등과 협력하여 반덤핑 조치의 경쟁저해성을 강조할 것이다. 동시에 현재 미국·일본 등 5개국과 실시하고 있는 경쟁정책협의회를 더욱 내실화하고, 현재 정책협의회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와의 협력 강화 방안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